

	AID전환중점전문대학지원사업운영 규정	규정번호	3-1-34
		제정일자	2026.08.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AID지원사업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근거로 주관대학인 유한대학교와 참여대학인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연합형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이하 "AID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대학)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참여대학은 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대학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또한 참여대학은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AID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대학의 규정 및 지침을 우선하여 따르고, 다른 법령 및 이 대학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조직 및 역할

제4조(조직) ① AID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에 AID지원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은 주관대학의 해당 위원회에 따른다.

1. 대학혁신위원회
2. AI·DX추진위원회
3. AID사업비관리위원회
4. AID사업 기자재·시설심의위원회
5. AID사업자체평가위원회

제5조(AID지원사업단)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AID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직속기관으로 둔다.

② 사업단의 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대학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고 본 사업의 전략 수립, 단위과제 조정, 성과관리, 대내외 협력 등을 총괄한다.

③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대학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사업단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주관대학 위원회에 따른다.

⑤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추진 및 프로세스 관리
2. 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3.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 모니터링
4. 사업 운영 관련 규정 관리
5. 사업 관련 조직 및 위원회 운영 지원

- 6. 연차별 평가보고서 작성
- 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장 사업 추진 및 재정

제6조(사업 추진) ① 사업단에서 사업 계획 수립, 운영, 개선 및 환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도록 한다.

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관대학의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7조(재정) ① AID지원사업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주관대학에서 관리하며, 인건비의 경우에만 주관대학에서 전출하여 운용한다.

② AID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관리하며, 관계법령 및 교육부 AID 지원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범위 내의 세부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 대학으로 전출된 사업비의 관리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한다.

제4장 기 타

제9조(세부지침) 기타 본 사업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대학의 세부지침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6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관련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